

조선시대 국가 중앙인쇄기관의 조직·기능 및 업무활동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Organization, Functions and Operation
of the Central Printing Office in the Joseon Period

金 聖 洙(Kim, Sung-Soo)**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교서관의 업무활동 |
| 2. 교서관의 조직 및 변천 | 5. 결 론 |
| 3. 교서관의 기능 | <참고문헌> |

< 초 록 >

교서관은 조선시대 국가 중앙인쇄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직·기능·업무활동을 수행하였다고 규정할 수 있다.

첫째, 교서관의 조직과 그 변천 상황을 考究하여 보았다. 그 결과,

1) 교서감(교서관)은 그 초기에 15명의 文臣이 근무하는 ‘正三品の 衙門(기관)’으로 출범하였다가, 1401년(태종 1)에는 書籍院을 병합하면서 ‘교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 조직 또한 강화되었다. 2) 세조 때(1460)에 주자소가 혁파되면서 교서관에 합속되었고, 1461년에는 ‘二品官의 衙門(기관)’으로 그 면모가 一新되었다. 3) 1466년(세조 12)에 교서관은 ‘典校署’로 그 명칭이 변경되면서 ‘五品の 衙門(기관)’으로 강등되었다가, 1471년(成宗 2)에 간경도감이 혁파됨과 동시에 교서관에 合屬되었으나, 교서관 조직의 승격은 없었다. 4) 成宗 때(1484)에 ‘전교서’는 ‘교서관’으로 명칭이 환원됨과 동시에 ‘三品の 衙門’으로 그 관제가 승격되었다. 그리하여 교서관의 조직체계는 1485년에 『經國大典』이 최종 반포와 더불어 ‘三品の 官衙’로 제도화되었다.

둘째, 교서관의 기능을 고찰하여 보았다. 그 결과, 교서관의 기능은 국가적인 규모와 측면에서 ① 書籍의 印出 및 頒賜, ② 木板·藏書(文籍·圖書)·鑄字의 관리, ③ 印篆·香祝의 管掌, ④ 活字의 鑄造, ⑤ 기타의 印務 등으로 크게 5大 구분하여 그 기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중 교서관의 ‘서적의 인출 기능’은 지방에서 판각한 판목 및 교서관 소장의 목판·금속활자에 의하여, 교서관에서 서적을 인출·보급하는 업무가 그 핵심이었음을 파악하였다. 특히 본 장에

* 이 연구는 <2008 청주직지축제기념, 조선왕실 주조 금속활자 복원사업 관련 학술회의> 『조선시대 인쇄출판 기관의 변천과 발달』에서 발표한 “校書館의 機能과 組織 및 印刷活動”을 토론을 거쳐 대폭 수정·보완하여, 연구논문 체제로 완성한 논문임.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인문학부 문헌정보학과 교수(muyokss@hnmil.net)

접수일: 2009년 6월 3일 최초심사일: 2009년 6월 4일 심사완료일: 2009년 6월 10일

서는, 조선 후기 교서관에서의 '校書館印書體字'의 주조를 주목하여, 교서관 기존의 기능에 '활자의 주조 기능'도 추가로 포함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셋째, 교서관의 업무활동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서관은 서적의 인출업무가 그 핵심 기능이었기 때문에 조선왕조 全時代에 걸쳐 인쇄·출판된 모든 官撰書籍은 교서관의 인쇄활동과 직·간접적으로 모두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要語: 교서관, 조선시대 관찬서적, 주자소, 전교서

<ABSTRACT>

In this research, the organization, functions and operations of Gyoseogwan(校書館) as the central government printing office in the Joseon Period is comprehensively investigated.

First, the organization of Gyoseogwan and its changes are as follows:

1) Gyoesogam(校書監: Gyoseogwan) was first established as the government organization on the Third Level of the official rank where 15 civil ministers worked. Its name was changed into Gyoseogwan and its organization was strengthened with the merger into Sejeokwon(書籍院) in 1401. 2) In 1460, Jujaso(鑄字所) then abolished was merged into Gyoseogwan which became the government organization of the Second Rank in 1461. 3) In 1466 Gyoseogwan whose name was changed into Jeongyoseo(典校署), was downgraded to the organization on the Fifth Rank. In 1471, Gangyeong-Dogam(刊經都監) then abolished was merged into Gyoseogwan without any upgrade in its Rank. 4) In 1484, Jeongyoseo was renamed Gyoseogwan, and again upgraded into the Third Rank. The organization of Gyoseogwan was finally established as the Third Rank in 1485, with the publication of 「Gyeongguk Daejeon(經國大典)」.

Second, the functions of Gyoseogwan and its changes are as follows: The functions of Gyoseogwan encompassed ① printing and distribution of books, ② supervision of woodblocks, collections and movable types, ③ supervision of official seals, incenses and prayers, ④ casting of movable types, ⑤ other miscellaneous duties. Especially it is confirmed that printing books with woodblock carved in local provinces and held by Gyoseogwan and distributing them was the core function. In this chapter, it is also maintained that the function of casting movable types should be added.

Third, the operations of Gyoseogwan was investigated in this research. With its main function of publishing books, it seems that Gyoseogwan wa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involved with most government publications during the whole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Key words: Gyoseogwan(校書館), Government Publications in the Joseon Period, Jujaso(鑄字所), Jeongyoseo(典校署)

1. 서론

조선은 그 개국 당시부터 ‘書冊을 나라의 가장 귀중한 보배(重寶)’¹⁾로 간주하는 숭문주의 정책을 펼쳤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392년 조선의 개국과 함께 설치된 중앙관청 중 서책의 인쇄·출판 등을 管掌하는 기관은 ‘校書監’이라는 명칭으로 출범하였다. 즉, 교서관은 ‘서적의 印出·頒賜 및 印篆[圖章]·香祝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설치되었던 衙門으로, 고려시대 秘書省(995: 성종 14)의 기능을 계승한 기관이라 볼 수 있다. 그러다가 태종이 즉위하면서 관제를 개혁(1401.7)할 당시에, ‘교서관’과 ‘書籍院’을 병합함과 동시에 그 기구와 기능을 확대하면서 ‘校書館’²⁾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교서관에 대하여,

첫째, ‘조선시대 교서관이 시대에 따라 어떠한 조직체계를 갖추었는가?’를 추적해 가면서 그 조직의 변천[隆替] 상황을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둘째, ‘교서관이라는 기관이 어떠한 일들을 도맡아 담당하며 遂行해 나갔는가?’에 대한 그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위와 같은 ‘교서관이 그 조직을 완비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어떠한 업무활동들을 전개하였는가?’에 관하여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교서관의 조직과 기능 및 업무활동을 분석·종합함으로써, 조선시대 국가 중앙인쇄기관으로서의 교서관에 대하여 논증하고자 한다.

-
- 1) ① 『朝鮮王朝實錄』 世祖實錄 19卷, 世祖6年(1460) 3月 14日(辛卯)條. ‘御札로 承政院에 내리기를, “나라에서 가장 貴重한 것은 書冊(御札下承政院曰: 國家最貴者書冊).”’
② 『朝鮮王朝實錄』 成宗實錄 161卷, 成宗14年(1483) 12月 23日(壬午)條. “本朝(朝鮮)에 서는 祖宗朝로부터 내려오면서 儒教를 숭상하고 道理를 중하게 여겨서, 書籍을 나라의 가장 귀중한 보배로 삼았습니다(本朝自祖宗以來, 崇儒重道, 以書籍爲國之重寶).”
2) 그 후 교서관은 1466년(세조 12)에 ‘典校署’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가, 1484년(성종 15)에 ‘교서관’의 명칭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이하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서책의 인쇄와 출판을 담당하였던 중앙인쇄기관을 ‘교서관’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여 지칭하고자 한다.

2. 교서관의 조직 및 변천

조선시대 중앙인쇄기관은 개국 이래 ‘校書監 → 校書館 → 典校署 → 校書館’ 등으로 각 왕의 중앙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그 명칭이 몇 차례 변화되면서 조직의 변천 또한 함께 뒤따른다. 이와 같은 조선시대 全時代 교서관의 조직 및 그 변천은 <표 1>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세기말 조선 개국 당시의 중앙인쇄출판기관이었던 교서관의 조직은 ‘정3품의 判事 2명, 중3품의 監 2명, 중4품의 少監 2명, 중5품의 丞 1명, 정7품의 郎 2명, 정8품의 著作郎 2명, 정9품의 校勘 2명, 중9품의 正字 2명³⁾’으로 총 15명의 관료(文臣)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이른바 ‘正三品の衙門(機關)’이었다.

그러다가 15세기의 벽두인 1401년(太宗 1)에 태종이 국가의 제도를 개편할 때, 교서관과 書籍院을 병합하면서 “교서관을 ‘校書館’으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少監 이상의 관원을 혁파하고, 중5품 校理 1명, 중6품 副校理 1명, 參外⁴⁾는 전과 같이 하였다.”⁵⁾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는 교서관 겸직의 堂上官을 혁파하면서 그 실무자인 중6품의 부교리 1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모양으로 나타나, 실제의 직제와 官員이 축소된 것처럼 보인다. 이에 따라 ‘그 기능 또한 약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한다.

그런데 위의 사항에 대하여,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보문헌비고』에서는 1401년에 ‘정2품의 대제학 2명을 提調, 정3품의 판교 1명, 중5품의 별좌 1명, 중6품의 별제 1명’이 더 추가된 직제가 기록되어 있다.

3) ① 『朝鮮王朝實錄』 太祖實錄, 卷1, 太祖元年 7月 丁未條. “校書監掌文籍圖書 及祭醮祝疏等事. 判事二正三品 監二從三品 少監二從四品 丞一從五品 郎二正七品 著作郎二正八品 校勘二正九品 正字二從九品.”
 ② 서울 特別市史編纂委員會, 『東國輿地備考』 (서울: 協進文化社, 1956), 45-46. “國初置校書監 掌印頒經籍 及 香祝印篆之任. 又置書籍監[書籍院] 太宗元年 合爲校書館.”
 4) 參外=參下: 조회에 참여할 수 없던 칠품 이하의 벼슬. 하급 관리를 이른다.
 5) 『朝鮮王朝實錄』 太宗實錄 2卷, 太宗1년(1401) 7月 13日(更子)條. “改校書監爲校書館, 革少監以上官, 置校理一從五品, 副校理一從六品, 參外依舊.”

<표 1> 교서관의 조직 및 그 변천6)

(x: 혁파)

西紀 年度 王·年度	品階	職階 官名	正二品	從二品	正三品	從三品	從四品	從五品	正六品	從六品	正七品	正八品	正九品	從九品					
			提調 (他官兼)	判事 (他官兼)	監 (他官兼)	少監 (他官兼)	校理	別坐	別提	參上	博士	著作	正字	副正字	直長	司錄	錄事	參外官	
太祖元年 ⁷⁾	1392	校書監			判事 2	監 2	少監 2	丞 1				郎 2	著作 郎 2	校勘 2	正字 2				
太宗元年 ⁸⁾	1401	校書館 (併合 書籍院)			x	x		校理 1			副校理 1	2	2	2	2				
增補 文獻備考 太宗元年 ⁹⁾	1401	校書館	2 (其一 大提學 例兼)		判校 1 (他官 兼)			1	1		別提 2	博士 2	著作 2	正字 2	副正字 2				
世宗22年 ¹⁰⁾	1440	校書館							1 充差	1 充差	1 既存								
(世祖6年) 世祖7年 ¹¹⁾	1460 1461	(合屬 鑄字所) 校書館	2									校書 郎 1	著作 郎 2	校勘 2	正字 1				
世祖12年	1466	典校署 (從五品 衙門 降等)						1	1	2		博士 1	著作 2	正字 2	副正字 2				
(成宗2年) 成宗15年	1471 1484	(合屬 刊經 都監) 校書館			判校 1			校理 1				2	2	2	2				
經國大典 禮典 (成宗 16) 회종본 반포	1485	校書館	2	1				1	他官 兼 (1)	1	他官 兼 (1)	2	2	2	2	他官 兼 (1)	他官 兼 (1)	他官 兼 (1)	他官 兼 (1)
燕山君12年 ¹²⁾	1506	校書館	2	1				1		1	2	x	x	x	專擔				
正祖元年	1777	奎章閣 外閣 (屬司 編入)	2 (本閣 提學 兼任)		副提 調 2 (本閣 直提學 兼任)			校理 1 (本閣 直閣 兼任)				1 (兼 任官)							

6) 이 표는 ‘한동명, “한국 중세문화의 제도사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6. 9), 128.’의 내용 중에서 「經國大典」까지의 사항들에 1차 근거하되, 그 세부 여러 사항은 필자가 수정·보완한 것임.

7) 「朝鮮王朝實錄」 太祖 1卷, 太祖1年(1392) 7月 28日(丁未)條.

아마도 이것은 태종의 직제개편 때, 교서관의 당상관은 他官兼職이기 때문에 그 겸직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는 '1403년(태종 3)에鑄字所가 설치되면서 주자소의 제조 및 관련 文臣들을 바로 교서관에 補強하면서 이루어진 사실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볼 수도 있다.

한편,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太宗代에 들어와서 '司勸'에서부터 '工作' 등에 이르기까지의 교서관의 인출 등 그 고유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관련 전문기술자[匠人]¹³⁾들이 무려 190명 이상 확보됨으로써, 서책 인출의 모든 工程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조직체계(system)를 비로소 완벽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교서관의 雜職 즉, 인쇄·출판을 위한 실무기능직은 태종 시대부터 그 조직체계를 수립하고, 성종 시대(1485)에 완비된 「경국대전」에서 제도화되면서 '서적의 인출'을 비롯한 실제의 여러 업무와 기능들을 원활하게 수행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¹⁴⁾

- 8) 「朝鮮王朝實錄」太宗 2卷, 太宗1年(1401) 7月 13日(更子)條. “改校書監爲校書館, 革少監以上官, 置校理一從五品, 副校理一從六品, 參外依舊.”
- 9) 「增補文獻備考」卷220, 職官考7, 校書館條. “太宗元年 改校書監爲校書館 定提調二員 其一大提學例兼 判校一員 他官兼 校理別坐各一員 別提二員 博士二員 著作二員 正字二員 副正字二員.”
- 10) 「朝鮮王朝實錄」世宗88卷, 世宗22年(1440) 2月 12日(乙酉)條. 議政府據吏曹呈啓: “校書館專掌諸書板字模印群書, 事務浩(禦) [繁], 但有參上官一人, 事多闕失. 請置提學別坐二人, 以三品以下六品以上充差, 與本館官員, 司中庶務一體施行. 遞代時, 依祿官例, 解由傳掌.” 從之.
- 11) 「朝鮮王朝實錄」世祖 25卷, 世祖7年(1461) 7月 18日(丙辰)條. “桂陽君璿啓: “校書館官吏不謹看守鑄字, 或埋塵土, 或致遺失, 以至鑄成之時, 多有被竊之弊.” 卽傳旨吏曹, 校書館提調梁誠之、鄭顯祖收驅使, 校書郎金補輪 著作郎徐効虞·宋守殷 校勘姜致恕·鄭惟產、正字金璿定本館書員.
- 12) 「朝鮮王朝實錄」燕山君日記 卷62, 燕山君12年 6月 日(己未)條. 傳曰: “錄考官承文院 校書館七品以下人員, 已革罷, 其加設各司直長以下官, 差填錄考官, 專掌記事, 而兼掌書冊製述事, 承文院、校書館七品以下官, 亦令兼帶於本衙門, 往來治事.”
- 13) <표 2>에서 '司準'은 '엄밀한 의미에서 匠人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왜냐하면, '사준'은 종8품으로 이들을 지칭할 때에도 예컨대 “補字官 1員” 등으로 표기하고 있는 사례(「經國大典」 吏典, 雜職 校書館條)가 있고, 이에 반해 匠人은 모두 '모모匠'으로 칭하고 있다. 또한 '司準' 직책은 교서관 소속 수장제원의 遞兒職으로 두었으며, 「대전후속록」이나 「규장각지」에서 사준은 '補字官'을 칭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5세기 벽두 무렵(1401-1403)의 교서관은 그 조직 총원이 모두 15명에 이르고, 그 잡직의 실무기능직 인원을 무려 200여명 확보함으로써, 개국 당시보다 오히려 강화된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 校書館 雜職¹⁵⁾

雜職名 時代·文獻	司准	司勘	守藏	粧册	書吏	冶匠	均字匠	印出匠	刻字匠	鑄匠	雕刻匠	木匠	紙匠	工造	工作	司令	軍事	僧
太宗代	1	1	44	20	16	6	40	20	14	8	8	2	4	4	2	약간명	약간명	약간명
成宗代	10	1	44	20	10	6	40	20	14	8	8	2	4	4	2	"	"	"
經國大典 ¹⁶⁾	1	1	44	20	16	6	40	20	14	8	8	2	6	4	2			
英宗(英祖)大王實錄廳儀軌 ¹⁷⁾	2-5	補字官 1-2	10-2 3	册匠 2-3			2-18	2-4	2-4	屏風匠4 多繪匠4	彫刻匠	小木匠 1-2	紙匠 1	推造匠2		助役 1-2	使喚軍2	

그런가 하면 15세기 중기 무렵, <표 1>에 의하면, 1440년(世宗 22) 實錄의 기사에서 ‘교서관에는 종5품 참서관 단 1명만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 대하여, 종5품(1명)과 정6품(1명)의 실무책임자격인 중간 관료 2명을 充差’한 사항이 보인다. 아마도 이는, 세종 때 주자소에서 更子字(1420)와 초주갑인자(1434) 및 丙辰字(1434)를 연이어 주조하면서 주자소의 서적인출업무는 눈부실 정도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고,¹⁸⁾ ‘교서관의 관원들도 모두 주자인쇄에

14) 한동명, “한국 중세문화의 제도사적 연구,” 124.
 15) ① 이 표는 ‘한동명, “한국 중세문화의 제도사적 연구,” 128’에 근거하고, 그 하단부는 필자가 추가한 것임(①司准 또는 唱準: 글자를 비교하여 소리내어 읽어주는 사람. ②司勘: 補字官. ③守藏: 활자 관리자. ④粧册: 製本匠).
 ② 「增補文獻備考」 卷220, 職官考7, 校書館條.
 16) ① 「經國大典」 吏典 雜職 校書館條. ② 「經國大典」 吏典 雜職, 校書館 사등시(司騰寺) 造紙所條. ③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校書館條. ④ 「경국대전」 工典 京工匠 校書館條.
 ⑤ 한동명, “한국 중세문화의 제도사적 연구,” 125.
 17) ① 「英宗大王實錄廳儀軌」 更子 6月 日. 戶兵曹. ② 남권희, “朝鮮時代 金屬活字 鑄造와 組版에 관한 研究,” 「갑인자와 금속활자」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7), 83.
 18) 世宗代의 印出 書目이 「葬日通要」에서부터 「吏文謄錄」에 이르기까지 무려 91종 이상에 달하고 있고, 그 중에는 <農書>와 같이 1,000件 이상 印出한 서적도 보이며, 50건 이상

참여¹⁹⁾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推定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당시 교서관의 조직은 일시 퇴보되었으나 그 기능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다가 世宗代에 설치된 正音廳과 冊房에서 正音(한글)의 諺解와 佛經의 인쇄사업 등이 1455년(단종 3)에 책방이 혁파되는 시점까지 이루어지고,²⁰⁾ 세조는 1460년(세조 6)에 주자소를 혁파하면서 이를 교서관에 합속시켰다. 그리하여 교서관의 기능이 다시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게다가 세조는 1461년에, 당시 대학자로 명망이 있고 실용을 중요시하며 국력 배양과 민생안정을 중요시한 梁誠之²¹⁾를 교서관의 제조로 임명하였다. 교서관 또한 양성지의 제조 임명과 함께 ‘二品官의 衙門(기관)’으로 格上됨으로써, 그 기능 또한 한층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 당시(1461-1466) 교서관의 조직은 조선시대의 교서관 史上 가장 상위 등급의 기관으로 그 조직을 운영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세조는 1461년(세조 7)에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이 시기 이후의 세조 시대에 의도적으로 기획·출판되는 佛經을 비롯한 많은 서적들의 인출·간행을 차츰 간경도감에서 主管하도록 誘導함으로써,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66년(세조 12)에 이르러 교서관은 ‘典校署’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관의 등급마저 또한 ‘五品の 아문’으로 강등되었다.

그러다가 성종이 즉위(1469. 11)하고 난 뒤, 1471년(성종 2) 12월에 간경도감은 혁파됨과 동시에 교서관에 合屬되었다. 그러나 교서관 조직의 승격은 없었다.

인출한 도서도 15종 이상 보이고 있다(한동명, “한국 중세인쇄문화의 제도사적 연구,” 68-71. 參照 要). 한편, 甲寅字 주조 이후 세종 시대 인쇄문화는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와 서적의 인출사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졌고, 이후 국가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서적은 가능한 한 鑄字로 인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 한동명, “한국 중세인쇄문화의 제도사적 연구,” 58.

20) 한동명, “한국 중세인쇄문화의 제도사적 연구,” 72-86. 참고.

21) 조선 세조·성종 때의 문신·학자(1414-1482). 자는 純夫. 호는 訥齋. 집현전 직제학, 홍문관 대제학 등을 지내면서 「팔도지리지」·「海東姓氏錄」·「輿地勝覽」 등을 편찬하였다. 저서에 「눌재집」이 있다.

무엇보다, 15세기 후기인 성종 시대에 들어와 전교서의 박사 고언겸 등의 상소(1483. 12. 23)에 의하여,²²⁾ 1484년(成宗 15) 1월 21일에 드디어,

典校署를 고쳐서 다시 校書館으로 일컬었다. 품계는 '3품 衙門'에 비하고, 兼判校 1員과 校理 1員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예전대로 하였는데, 이는 本署 [전교서] 관원[고언겸 등]의 上疏에 인한 것이다.²³⁾

라 하여, 성종은 마침내 '전교서'를 '교서관'으로 명칭을 환원하면서, 그 관제 또한 '3품의 아문'으로 승격·조정하였다.

이로써 1484년의 교서관은 드디어 개국 초기의 조직 면모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게다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종이 마련한 교서관의 제도는 1485년에 『경국대전』이 최종 반포되면서 명실상부한 '三品の 官衙'로 제도화됨으로써 명실공히 국가 중앙인쇄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6세기에 들어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산군 때인 1506년에 '교서관의 7품 이하의 관원을 혁파'한 것은, 1506년 당시의 열악한 사회 환경으로 인하여, 많은 관원의 녹을 충당할 수 없어서 감량대책을 세운 일²⁴⁾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서관만의 일이 아니고, '藝文館·成均館·承文院·校書館'의 7품 이하 관원을 파하고, 6품의 관원으로 겸임하게 하였다²⁵⁾는 기사로 보아, 정부의 급료를 감량하기 위하여 四館의 하급관리를 모두 혁파한 사례로 보인다.

22) 『朝鮮王朝實錄』 成宗實錄 161卷, 成宗14年(1483) 12月 23日(壬午)條. "... 列聖朝로부터 내려오면서 藝文館·成均館·校書館을 三館이라고 일컬어서, 科擧를 거쳐 뛰어난 자로 하여금 모두 여기에 소속하게 하여 出身하는 곳으로 삼았으니, ... 그런데 本署에 대해서만 館이라는 한 글자를 아끼니, 어찌 先王의 제도에 어긋남이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 만약 전교서는 先王이 정한 관제이므로 가볍게 고칠 수 없다고 말한다면, 校書監·校書館 역시 선왕의 관제인데 세조께서 고쳤고, ..., 本署를 정3품 아문으로 올리고 선왕의 제도를 회복하여 이름과 실상이 서로 맞게 하면, 비단 신 등의 다행일 뿐만 아니라 또한 斯文의 한 가지 큰 다행입니다."

23) 『朝鮮王朝實錄』 成宗實錄 162卷, 成宗15年(1484) 1月 21日(己酉)條. "改典校署, 復稱校書館. 秩視三品衙門, 設兼判校一員, 校理一員, 餘仍舊, 因本署員上疏也."

24) 『朝鮮王朝實錄』 燕山君日記 60卷, 燕山君11年(1505) 11月 6日(丁亥)條.

25) 『朝鮮王朝實錄』 燕山君日記 62卷, 燕山君12年(1506) 5月 27日(丙午)條.

따라서 이는 교서관만의 기능이나 조직을 축소한 사례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서관은 「경국대전」의 반포(1485) 때부터 1777년(정조 1)까지 오랜 기간 동안 조직적 측면에서 큰 변화와 굴곡이 없이 ‘三品の 衙門’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²⁶⁾ 그러다가 1777년에 정조의 강력한 문화정책 및 개혁 정치의 큰 틀을 마련할 때, 교서관은 奎章閣의 外閣으로 편입되었으나 그 기능은 조선 말기까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교서관의 기능

본 장에서는 교서관의 기능을 살펴보기 위하여,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조선 초기의 교서관에 관련된 여러 문헌의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²⁷⁾ 교서관의 기능은

26) 임진왜란 이후 약 50여년간은 교서관의 기능이 한 때 정지되었고, 그 대신 훈련도감에서 금속활자 인쇄의 대체수단으로 목활자로 인쇄·출판업무를 대행하는 일도 없지 않았다.

27) 이하의 기록들은, 교서관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자료들을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조선 개국(1392)부터 국가의 기반이 완비되는 약 100년간의 여러 사항들을 추출하여 종합·정리한 것임.

- ① 「朝鮮王朝實錄」太祖實錄 1卷, 1年(1392 壬申) 7月 28日(丁未) 條. “校書監 掌文籍、圖書及祭醮、祝疏等事.”
- ②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東國輿地備考」(서울: 協進文化社, 1956), 45-46. “國初 置校書監 掌印頒經籍 及 香祝印篆之任.”
- ③ 「經國大典」吏典, 校書館條. “掌印頒經籍 及 香祝印篆之任 並用文人”
- ④ 「朝鮮王朝實錄」世宗實錄 70卷, 世宗17年(1435) 10月 19日(丁巳). “鑄字所自初設立, 其舊鑄字所, 唯置木板, 令校書館掌之.”
- ⑤ 「朝鮮王朝實錄」世宗實錄 88卷, 世宗22年(1440) 2月 12日(乙酉). 議政府據吏曹呈啓: “校書館專掌諸書板字模印群書, 事務浩(禦)繁, 但有參上官一人, 事多闕失. 請置提舉別坐二人, 以三品以下六品以上充差, 與本館官員, 司中庶務一體施行. 遞代時, 依祿官例, 解由傳掌.” 從之.
- ⑥ 「朝鮮王朝實錄」世宗實錄 83卷, 世宗20年(1438) 11月 4日(甲申). 議政府據禮曹呈啓: “校書館篆字肄習之法, 載在「六典」. 然無黜陟之法, 不肯用心肄習, 圖書及碑碣篆額能書者少, 實爲可慮. 乞自今每月試取, 及至殿最, 雖在中下等, 字學居上等, 則從字學等第, 不許貶黜. 其每居上等十分精熟者, 不次敘用, 以勸後來.” 從之.

국가적인 규모와 측면에서 ‘① 書籍의 印出 및 頒賜, ② 木板·藏書(文籍·圖書)·鑄字의 관리, ③ 印篆·香祝의 管掌, ④ 活字의 鑄造, ⑤ 기타의 임무’ 등으로 크게 5대 구분하여 그 기능을 요약할 수 있다. 이들을 각각 詳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적의 인출 및 반사’의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⑦ 「朝鮮王朝實錄」世宗實錄 78卷, 世宗19年(1437) 8月 12日(己巳). 禮曹啓: “印篆雖不精熟, 可臨時做本文書寫, 若小篆文, 非十分精熟者, 不能書之. 今校書館參外官專不用意肄習, 圖書及碑碣額篆凡干傳久之文, 善書者甚少. 乞今後四孟朔, 字學試才分數, 明白置簿, 以憑殿最, 上多者雖當外敘, 超授京官, 仍兼本館職事, 專任篆書. 且篆字, 本善書者所能, 校書館員額數少, 善書者不多. 乞擇兩館及承文院參外官善書者, 從校書館所薦差換兼官, 其試取升黜, 一依祿官例.” 從之.
- ⑧ 「朝鮮王朝實錄」世宗實錄 7卷, 世宗2年(1420) 閏1月 28日(丁酉). 啓命殿親享儀曰: 齋戒: 前享三日, 俱北向. 校書館員以祝版捧進, 近臣傳捧以進, 上王殿下署訖, 近臣捧出付殿司.
- ⑨ 「朝鮮王朝實錄」世宗實錄 86卷, 世宗21年(1439) 7月 16日(壬戌). 校書館啓: “京外衙門印信大小方廣, 不合體制, 字畫剗缺, 不成篆文, 印跡考驗爲難, 有違傳久示信之義. 本館專掌字學之任, 令京外大小各衙門印其本官印章, 并錄所鑄年月, 送于本館, 本館改正置簿, 以備後日考驗. 且「續六典」云: ‘三館權知與正官同’. 本館權知不仕本官, 實爲未便, 請依「續典」常時仕官, 肄習大小篆八分.” 從之.
- ⑩ 「朝鮮王朝實錄」文宗實錄 4卷, 文宗即位年(1450) 11月 10日(庚戌). “安平大君瑑進「歷代帝王名賢集」古帖、「王羲之眞行草」三體、「趙子昂眞草千字」等書法板本, 命付校書館, 許人模印.”
- ⑪ 「朝鮮王朝實錄」世祖實錄 6卷, 世祖3年(1457) 1月 23日(戊子). “傳于校書館曰: “趙孟頫所書「證道歌」「紫芝歌」木板, 立簿藏之, 印出廣布.”
- ⑫ 「朝鮮王朝實錄」世祖實錄 11卷, 世祖4年(1458) 1月 19日(戊寅). “戊寅/禮曹啓: “講習漢訓, 事大先務, 但書冊稀小, 學者未易得觀. 請姑將「朴通事」「老乞大」各一件分送黃海、江原兩道, 刊板送于校書館, 印行廣布.” 從之..”
- ⑬ 「朝鮮王朝實錄」世祖實錄 26卷, 世祖7年(1461) 10月 9日(乙亥). “命校書館印御製「兵家三說」, 賜分宣傳官、都鎮撫、衛將、鎮撫、部將等.”
- ⑭ 「朝鮮王朝實錄」世祖實錄 9卷, 世祖3年(1457) 9月 18日(己卯). 傳于承政院曰: “予於教育儒生, 委之學官, 無所勸勵, 深以爲嫌. 念諸生書籍難得, 令梁誠之錄藝文館所藏書, 將以刊行.” 都承旨曹錫文曰: “校書館有五經板子, 官爲印賣, 成均館書籍亦多, 教官宜隨諸生所無授之.”
- ⑮ 「朝鮮王朝實錄」成宗實錄 161卷, 成宗14年(1483) 12月 23日(壬午). “本署職掌, 則曰香祝, 曰書籍, 曰篆文, 而歷代皆重其任.”

첫 번째로 ‘서적의 印出(인쇄·출판)과 관련하여, 위에서 제시한 문헌들²⁸⁾ 중에서 ‘掌印頒經籍·印出廣布·模印群書·許人模印’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서적’은 ‘유학의 여러 經籍 및 諸般圖書’를 의미하고, ‘印頒’은 ‘編次·印刷·粧潢(製本)·頒賜 등의 인쇄·출판 및 배포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實例로 성종 때 전교서 박사인 高彥謙 등이 上書한 내용을 보면,

本朝에서는 祖宗朝로부터 내려오면서 儒教를 숭상하고 道理를 중하게 여겨서, 서적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寶貝)로 삼아 천하의 책을 모아서 隆文樓·隆武樓에 간직하여 考閱에 대비하였습니다. 文樓·武樓를 맡은 곳은 本署에 있으며, 또 책을 인쇄할 때에는 典校官이 한쪽에는 正本을 가지고 한쪽에는 인쇄된 책을 가지고서 글자마다 교정하고 줄마다 검사하여, 글이 빠진 것은 보충하고 글자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서 編次하고 粧潢합니다. 그리하여 성상께서 독서하시는 데에 대비하여 우리 전하로 하여금 帝王의 마음가짐과 다스리는 要旨를 연구하고 前代의 治亂興亡의 원인을 살피게 하니, 그 職任이 진실로 가볍지 아니합니다.²⁹⁾

라 하여, 조선시대 ‘서적은 국가의 귀중한 보배’로 간주되었으며, ‘책을 인출할 때 전교관이 정본과 인본을 엄정하게 對校하는 업무내용과 그 편차의 확인 및 장황’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출판에 관한 자세한 임무를 설명하면서, ‘교서관의 서적 인출의 직임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교서관에서 서적을 인출한 여러 사례들을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종합하여 보면, 王命이나 신하들의 進言에 의하여 인출하되, 기존의 판본이 없는 서적 중 정부로서 널리 印頒할 필요가 있는 것은 교서관에서 처음에 활자로 인출하고, 그 인본을 지방 감영에 보내어 다시 刻板[翻刻]케 하였다.³⁰⁾ 또한 기존의 판본(목

28) 上揭註의 내용 각 사항 참조.
29) 『朝鮮王朝實錄』 成宗實錄 161卷, 成宗14年(1483) 12月 23日(壬午)條. “本朝自祖宗以來, 崇儒重道, 以書籍爲國之重寶, 聚天下之書, 藏之隆文 隆武樓, 以備考閱. 而文、武樓所掌, 在本署, 又於印書之時, 典校官一執正本, 一執印書, 字字讎校, 行行檢會, 書之脫落者補之, 字之魯魚者正之, 編次之, 粧潢之.”
30)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탐구당, 1974), 204.

판)이 있는 것은 판본으로 인쇄하고, 주자로 인쇄할 수 없는 지도류 등의 특수한 서적은 목판본으로 인쇄하였다. 그리고 告示文이나 서류의 형식 및 表箋·策文 등의 書式 등은 언제나 주자로 인쇄·배포하였다.³¹⁾ 또한 科擧와 관련한 유학서적 및 유생들에게 대량으로 필요한 서적은 ‘鑄字印書로는 廣布할 수 없으니 板木으로 인쇄하도록 하고 있음’³²⁾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각 지방의 감영에서 판각된 판본을 교서관에 進上케 하고, 서적의 인쇄 및 배포는 교서관에서 主管하는 것이 상례였다.³³⁾ 그러다가 인쇄술의 발전과 함께 각 지방에서도 서적인출이 활발하게 되자, 교서관은 전국의 판본 소장 상황을 파악하게 하는 업무도 그 기능의 하나로 첨가되었다.³⁴⁾

위와 같이 ‘교서관의 서적인출 사업’은 지방에서 판각한 판목이나 교서관 소장의 목판·활자에 의하여 교서관에서 서적을 인쇄·보급하는 업무가 그 주된 기능이었다고 볼 수 있다.³⁵⁾

두 번째로 ‘도서의 頒賜’와 관련하여, 조선시대는 개국 초부터 ‘書冊을 國家의 重寶’³⁶⁾로 看做하고 儒敎·崇文主義에 입각한 政策을 펼쳤기 때문에, 새로운 건국의 기반 마련 및 정치질서의 확립을 위한 儒學書를 비롯한 정치·역사·경제·사회·문화 등과 관련한 다양한 서적의 인쇄·출판이 요구되었고, 이와 더불어 출판된 도서의 보급 즉 頒賜의 문제도 隨伴되었다.³⁷⁾ 그러나 당시 인쇄되는

31) ①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4卷, 世宗11年 5月 癸酉條., ②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62卷, 世宗15年 10月 丁丑條., ③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84卷, 世宗21年 2月 乙卯條. ④ 韓東明, “韓國 中世文化的 制度史的 研究,” 152.

32)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51卷, 世宗13年 3月 癸亥條. 목판본의 제작은 주로 목재가 풍부한 경상도와 전라도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으며, 충청도와 강원도 지역의 官司로 하여금 刻板한 경우도 실록에 보인다.

33) 韓東明, “韓國 中世文化的 制度史的 研究,” 153. 참고.

34) 그 實例를 하나만 들면, 「世祖實錄」 40卷, 世祖12年(1466) 11월 17일, 乙酉條 에 보면, 京中의 서적관리는 典校署(교서관)가 맡고 있지만, 각 外方의 板本의 소장 및 관리 상황을 승정원으로 하여금 파악하게 하고, 각 外方에서 소장한 판본을 1부씩 印出·進上하게 하여, 이를 교서관에서 詳考하게 하였다.

35) 그밖에 교서관의 인쇄·출판의 활동에 관한 자세한 상황은 제4장에 논술할 것이다.

36) 脚註 1)의 註文, 참조.

37) 인쇄·출판의 기능을 담당하였던 교서관에서 그 반사의 기능 또한 자연스럽게 담당하게

각 서적의 部數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실무에서 참고해야 할 六曹를 비롯한 관련 각 기관에 골고루 반사하는 데에도 많은 制約이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인출하는 서적의 부수와 성격에 따라서 그 반사의 官等에 제한을 두거나 특정인을 지명하여 반사한 사례 등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³⁸⁾

위와 같은 조선시대 서적의 인출과 반사는 항상 왕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반사의 거의 모든 경우에 頒賜記를 작성하여 그 반사 대상을 선정하고,³⁹⁾ 각각의 반사되는 서적에도 모두 그 반사기를 기입한 사례들을 각 古書의 內賜記를 통하여 무수히 찾아 볼 수 있다.

둘째, ‘木板(板木)·藏書(文籍·圖書)·鑄字의 관리’의 제반 관리의 기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도서관의 ‘목판 관리의 기능’과 관련하여, 조선 조정에서는 국초 이래 도서관의 大廳 3間을 비롯하여 西板堂庫 등 차례로 모두 29간의 건물에 사서오경 및 諸史字集 판본을 所藏·分藏하였던 기록⁴⁰⁾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435년(世宗 17) 9월에 鑄字所를 景福宮 내로 이전하고, 그 事後 조치로 舊鑄字所(건물)는 木板庫로 용도변경하고, 도서관으로 하여금 이를 관장케 한 기록⁴¹⁾도 보인다. 이와 같은 기록들로 보아, 도서관의 본연의 업무 중 ‘목판의 관리’ 기능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국초부터 국가의 중요한 모든 판본은 도서관에서 일괄하여 소장·관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⁴²⁾ 뿐만 아니라 地方官司 및 寺刹 등에 보관되어 있는 판목의 관리도 도서관으로 하여금 主管토록 하고 있다.⁴³⁾ 이로 보아

되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38) 경우에 따라서 ‘二品 以上’(『世宗實錄』 44卷, 世宗11年 4月 丁酉條), ‘堂上官 以上’(『世宗實錄』 43卷, 世宗11年 2月 壬午條), ‘東班五品以上, 西班三品以上’(『世宗實錄』 43卷, 世宗11年 3月 甲子條), ‘特定人’(『世祖實錄』 17卷, 世祖5年 8月 癸巳條), 參照.

39) 그 實例로, 『朝鮮王朝實錄』 端宗實錄 7卷, 端宗1年(1453) 7月 22日(丁丑)條, 參照.

4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 京都下 校書館條, 參照.

41)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70卷, 世宗17年(1435) 10月 19日(丁巳). “鑄字所自初設立, …其舊鑄字所, 唯置木板, 令校書館掌之.”

42) 한동명, “한국 중세인쇄문화의 제도사적 연구,” 174-175. 參考.

43) ①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11卷, 世宗3年 2月 丙申條, 參照. ② 『朝鮮王朝實錄』 世宗實

교서관의 ‘목관의 관리’가 그 주된 업무 중의 하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장서의 관리’ 기능 또한 교서관의 고유 기능으로 중요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교서관 자체가 관목의 관리와 서적의 印出·頒賜의 기능 이외에 국가적인 장서를 관리하는 圖書館의 기능도 갖고 있었음’⁴⁴⁾을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서 多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에서 제시한 여러 문헌 중에서 ‘掌文籍圖書’·‘掌印頒書籍’·‘校書館專掌 群書’·‘本署職掌’·‘書籍 而歷代皆重其任’⁴⁵⁾라고 기록하고 있음으로도 충분히 증명된다 하겠다. 그리하여 지방의 감영에서 인쇄하여 進上하는 여러 서적,⁴⁶⁾ 국가의 중요한 서고의 소장본 중 기타 서적,⁴⁷⁾ 및 교서관(典校署)에서 인출하는 서책 가운데서 장기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서책은 반드시 교서관에 1건씩 分藏하도록 하고 있음⁴⁸⁾을 보아도, 교서관의 장서관리 기능은 매우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⁹⁾

세 번째로 ‘鑄字의 관리’ 기능과 관련하여, 예컨대 1440년 2월 12일의 기록에

錄 39卷, 世宗10年 2月 己酉條, 參照. ③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39卷, 世宗12年 11月 己酉條, 參照. 즉, 지방관사에 소장된 관목의 관리는 所在 관사의 관리로 하여금 소장·관리 하면서, 守令이 교체될 때마다 명백히 유실된 책판을 보완케 하였으며, 이를 중앙의 교서관으로 하여금 실행 여부를 규찰하도록 하면서, 지방에서 소장이 어려운 판본은 교서관에서 회수하여 관리케 하였다. ④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104卷, 世宗26年 5月 壬戌條, 參照. ⑤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28卷, 世宗7年 4月 更子條, 參照. ⑥ 「朝鮮王朝實錄」, 端宗實錄 7卷, 端宗元年 9月 戊寅條, 參照. 즉, 각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판본 및 寫經·인쇄된 佛經 등도 도난·파손되지 않도록, 소재지의 수령으로 하여금 그 소장 상황을 목록을 만들어 啓聞토록 하고, 사찰 소장 중요한 책판들은 교서관으로 移置·관리케 하였다.

44) 한동명, “한국 중세인쇄문화의 제도사적 연구,” 178-179. 參考.

45) 脚註 27)의 내용 각 사항 참조.

46)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14卷, 世宗7年(1425) 11月 丁酉條. “慶尙監司 河演進 「入學圖說·易·詩·春秋·中庸·大學·論語·孝行錄·篆書千字文·大學千字文」 頒賜宇成均館·校書館·四部學堂.”

47) 「朝鮮王朝實錄」, 世祖實錄 40卷, 世祖12年(1425) 11月 乙酉條. “春秋館及 外三史庫 文武樓內 不緊書冊並皆出 分置藝文·成均館·典校署 以革混雜難考之弊.”

48) 「朝鮮王朝實錄」, 世祖實錄 40卷, 世祖12年(1425) 11月 乙酉條. “今典校署 印出書冊內 出於一時之事不必傳久者外 例將十件 弘文館藏二件 春秋館外三庫 典校署·文武樓·藝文館·成均館 各藏一件.”

49) 한동명, “한국 중세인쇄문화의 제도사적 연구,” 179.

議政府에서 吏曹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校書館은 여러 서적의 板[목판]과 字[鑄字: 활자]와 模印[摹印: 印篆] 및 群書[藏書]를 專門的으로 管掌(專掌)하여, 그 사무가 몹시 浩繁[繁多]하옵건만, 단지 參上官 1인만이 있으므로 일이 많이 꺾일피오니, 提舉(別提)와 別坐 두 사람을 두게 하되, 3품 이하 6품 이상으로 充差하여 본관의 관원과 같이 서무를 맡아서 일체로 시행하게 하옵시고, 교체해서 갈릴 때에는 祿官例에 의하여 解由하여 傳掌하게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⁵⁰⁾

라 하여, ‘교서관의 여러 事務가 몹시 번다함을 지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는 교서관의 전문 업무는 ‘木板·鑄字(목활자 포함)·印篆·香祝·藏書의 管掌⁵¹⁾임을 분명히 하면서, 교서관의 전문 업무 중 ‘주자의 관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²⁾ 게다가 조선 후기인 「英宗大王實錄廳儀軌」에 의하면, 1780년(更子) 4월에 “영묘조실록을 인출하기 위하여 교서관에서 보관해 온 주자들을 실록청으로 옮겨 인출⁵³⁾하는 記事의 내용을 보더라도, 교서관에서

50) 「朝鮮王朝實錄」世宗實錄 88卷, 世宗22年(1440) 2月 12日(乙酉)條. “議政府據吏曹呈啓: ‘校書館專掌諸書板字模印群書, 事務浩(禦)(繁), 但有參上官一人, 事多闕失. 請置提舉別坐二人, 以三品以下六品以上充差, 與本館官員, 司中庶務一體施行. 遞代時, 依祿官例, 解由傳掌.’ 從之.”

51) 「經國大典」吏典, 校書館條. “掌印頒經籍 及香祝印篆之任 並用文人.”

52) 그런데 위의 인용문의 내용에서 1440년 2월 당시 교서관의 전문업무 종사자가 참상관 1인에 국한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이는 1403년(태종 3)에 鑄字所를 설치하고, 세종 때에는 更子字·甲寅字·丙辰字 등을 새로 주조하면서 주자소를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인쇄·출판활동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印出과 관련한 교서관의 전문종사자들이 모두 주자소에 투입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주자소를 궁중에 이전한 이후부터 교서관의 명칭이 주자소로 代辯되고 있음으로도 알 수 있다. 이것은 교서관과 주자소가 동일한 지역(薰陶坊)에 있었고, 업무까지도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교서관의 명칭 대신에 주자소로 통칭되었고 심지어는 교서관의 관목관리 업무까지도 주자소의 관리하에 있는 것같이 기록(① 「世宗實錄」 43권, 世宗11년 2월 己亥條. ② 「世宗實錄」 31권, 世宗11년 3월 壬子條. ③ 「世宗實錄」 68권, 世宗17년 4월 己酉條. ④ 「世宗實錄」 70권, 世宗17년 10월 癸亥條. 參照 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서관의 업무가 주자소의 小管인 것같이 표현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교서관이 판목·활자의 관리와 인쇄 업무를 실행하였다고 여겨진다(한동명, “한국 중세인쇄문화의 제도사적 연구,” 177-178).’

53) ① 「英宗大王實錄廳儀軌」 1780년(更子) 4月條. “영묘조실록의 교정이 끝나면서 인출을 해야 할 때, 교서관에 보관해 둔 주자들을 실록청으로 옮겨 실록을 인출하는데 관련되는 기술자와 담당자들이 차질없이 대비할 것.”

② 남권희, “조선시대 금속활자 주조와 조판에 관한 연구,” 「갑인자와 한글활자」(청주:

는 조선 초기에서부터 그 후기에 이르기까지 주자의 관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印篆·香祝의 管掌’ 기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印篆의 제작 및 管掌’ 기능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교서 박사 고언겸의 上書’에서 그 사례를 들면,

국가에서 朝廷 官府의 簿書 가운데 모두 印信을 찍어서 간사하고 거짓됨을 방지하는데, 印篆을 쓰고 印信을 상고하는 일은 오로지 本署에 위임하였으니, 또한 가볍고 천한 일이 아닙니다.⁵⁴⁾

라 하여, 교서관은 ‘印篆을 쓰고 이를 詳考하는 일’을 管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교서관의 ‘인전의 제작 및 관장’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세종 때(1439: 세종 21) ‘각 衙門의 인신이 剋缺되어 다시 改鑄할 때에도 교서관에서 관장하고 있음’⁵⁵⁾을 보여주는 사례에서 교서관의 ‘인전의 제작 및 관장’은 중요한 기능으로 수행하였음을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세종 때부터 篆字를 잘 쓰는 유생을 추천하여 교서관에 임명하였다.⁵⁶⁾ 또한 세종 때 거듭하여 교서관

청주고인쇄박물관, 2007), 81-82.

54) 『朝鮮王朝實錄』 成宗實錄 161卷, 成宗14年(1483) 12月 23日(壬午)條. “國家於朝廷官府簿書之間, 皆着印信, 以防奸僞, 而書印篆, 考印信, 專委於本署, 則亦非輕賤事也.”

55)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86卷, 世宗21年 7月 壬戌條, 參照.

56)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78卷, 世宗19年 8月 12日(己巳)條. 예조에서 아뢰기를, “印章의 篆字는 비록 精熟하지 않더라도 임시해서 본문을 模倣하여 書寫할 수 있으나, 만약 작은 篆文이라면 심분 정숙하지 않은 것은 서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 校書館의 參외관이 전혀 마음을 써서 도서와 碑碣·額篆을 익히지 아니하여, 무릇 오랫동안 전할 문서를 잘 쓰는 자가 매우 적사오니, 원컨대, 이후로는 四孟朔(음력 1·4·7·10월)에 字學으로써 試才하여, 점수[分數]를 명백하게 문부에 기록하여 두었다가 殿最에 빙거하게 하고, 上이 많은 자는 비록 外任으로 사용되더라도 특별히 景觀으로 뛰어올려 제수하고, 본관의 직사를 겸하여 進서를 專任하게 하소서. 또 전자를 잘 쓰는 校書館員의 액수가 적고, 잘 쓰는 자가 많지 않사오니, 원컨대, 양관과 승문원 參외관으로서 글씨를 잘 쓰는 자는 교서관의 추천에 따라 景觀으로 알아들이고, 그 試取와 올리고 내치는 것은 한결같이 勅官의 예에 의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의 字學을 거듭 권면하고 장려하였다.⁵⁷⁾

위와 같이 조선 조정의 관부에서 印信을 사용하는 제도는 太宗 때(1403) 마련된 것으로써,⁵⁸⁾ 印章의 규격은 최상위 기관인 中書門 인신 '2寸1分'에서부터 최하위 기관인 參外衙門의 '1寸5分'에 이르기까지 12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마침내 「經國大典(1484: 成宗 15)」의 '인신 사용에 대한 규정'⁵⁹⁾에서 '2寸9分부터 1寸'의 10등급 규격의 구분으로 그 제도가 확립되었다.

두 번째로 '香祝의 管掌' 기능과 관련하여, 조선시대의 왕실의 祭祀는 국가의 大事로 간주하고 특히 '향축'을 중요시 하였다. 바로 이 기능을 교서관이 담당하고 있다. 그 實例로 전교서 박사 고언겸 등이 상서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은 듣건대, 나라의 큰 일은 祭祀와 軍事에 있다고 하니, 반드시 제사를 큰 일로 삼는 것은 어찌 宗廟를 받들고 神祇(天地의 神)를 제사한 뒤에야 친히 국가를 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犧牲(친지 종묘의 제사에 제물로 쓰는 짐승)이 비록 갖추어졌고 粢盛(제사 음식)이 비록 깨끗할지라도 香祝이 갖추어지지 아니하면 神明에 交感할 수 없습니다. 典校官은 향축을 받들고 御押⁶⁰⁾을 받들어서 무릇 국가의 大·中·小 제사에 모두 질서 있게

57)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88卷, 世宗22年(1440) 1月 10日(癸丑)條. 그 大略은 아래와 같다. ① 교서관에서 篆字를 익힌 관리 중 3·4품이면 '校理'에 겸임하고 5·6품이면 '郎'직에 겸임하여 그 임무를 맡게 하고, 승진 때에는 교서관의 천거를 반드시 거치게 하였다. ② (관리의 선발 과목에) 大篆은 碑·碣에 쓰고, 小篆은 도서 위에 쓰며, 方篆은 印章에 쓰는 것이라, 모두 빠뜨릴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四孟朔 때 예조와 그 學의 제조가 시험해 뽑되 대전·소전·인전·八分을 차례로 쓰게 하고, 또 歲末에는 평점 등급을 아울러 고찰하고, 去官할 때에는 4년간의 평점을 통산하여 우수한 자는 비록 외직에 보임할 자라도 그대로 京官의 清要職에 제수하면서 교서관의 직임을 겸임하게 하였다. ③ 평상시에 篆字를 공부하게 하여, 매월 한 차례씩 전자를 쓰게 하고, 그 등급을 매겨서 월말에 啓聞하게 하고, 또 연말에 이조에 통보하여 승진·좌천의 증거로 삼았다. ④ 예조에 도착한 공문서는 교서관으로 하여금 印迹을 조사하게 하는데, 만약 印跡의 畫이 명백한데도 그 眞僞를 식별하지 못하는 자는 附過하여 5차에 이르면 그 관직을 파면하였다. ⑤ 예조와 교서관에서 取才할 때에 전자를 쓰지 아니하는 자는 그 次知(≡ 執事: 대가를 받고 남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던 사람)를 가두고, 세 차례나 쓰지 아니하는 자는 啓聞하여 논죄한다. ⑥ 새로 급제한 자를 分館할 때에 이조로 하여금 나이 젊고 글씨 잘 쓰는 자를 골라서 差定하게 하였다.

58) 「朝鮮王朝實錄」 太宗實錄 5卷, 太宗3年(1403) 2月 戊午條, 參照.

59) 「經國大典」 禮典, 用印條, 參照.

제사하여, 우리 전하로 하여금 그 仁孝誠敬의 지극함을 다하게 하니, 그 직업이 진실로 가볍지 아니합니다.⁶¹⁾

라 하여, 국가의 大事인 제사의 儀禮에서 반드시 향축을 갖추어 신명에 교감하도록 하는 ‘향축의 기능’을 특히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서관에서 관장하는 축판(祝板)에 관한 기사 또한 실록에서 다수 확인할 수 있다.⁶²⁾

넷째, ‘금속활자의 주조’ 기능과 관련하여, 조선 후기 특히 임진왜란 이후 교서관의 기능을 한 가지 附加한다면, ‘금속활자의 鑄造’ 기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논술하면 아래와 같다.

조선 前期의 경우, 금속활자의 주조는 鑄字所·正音廳(冊房)·刊經都監 등의 임시기관을 설치하여 수행하였고, 조선 중기의 경우 訓練都監 등에서 활자의 주조를 代行하는 등, 이러한 기관들에서 금속활자를 주조하는 기능이 편중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16세기 이전 교서관의 고유기능 중 ‘금속활자의 주조’는 그 주요 기능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선 초기 주자소 등 금속활자 주조를 위한 임시기관의 설치는 조선 건국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서적들을 간행하기 위한 시급한 방편으로 보인다. 즉, 1403년(太宗 2)에 주자소를 설치하고, 국가의 인재 등용을 비롯한 건국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유학·역사(정치)·문학·農桑·의학 등의 제반 관련서적들을 短時日 내에 다양하게 간행하는 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대별 필요성에 입각한 활자주조를 위한 임시기관을 각각 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60) 임금의 手決을 새긴 도장.

61) 『朝鮮王朝實錄』 成宗實錄 161卷, 成宗14年(1483) 12月 23日(壬午)條. “臣聞, 國之大事, 在祀與戎, 其必以祭祀爲大事者, 豈非以奉宗廟 享神祇, 然後可以爲天下國家也? 是故犧牲雖備, 粢盛雖潔, 而香祝不具, 則無以交於神明矣. 典校官奉香祝, 承御押, 凡國家大 中、小祀, 咸秩序, 而祭之, 使我殿下, 得盡其仁、孝、誠、敬之至, 則其職任, 誠非輕矣.”

62)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7卷, 世宗2年(1420) 閏1月 28日(丁酉). 예조에서 계명전에 임금 이 제사 드리는 예식을 아뢰는 내용에서, “... 校書館의 관원이 축판을 받들고 나아오면, 근신이 받아서 받들어 올린다. 상왕 전하가 서명하고 나면, 근신이 받들고 나와서 전사에게 넘겨 준다(啓命殿親享儀曰: 齋戒: ... 校書館員以祝版捧進, 近臣傳捧以進, 上王殿下署訖, 近臣捧出付殿司)”는 기사를 비롯하여, 그 외 다수의 제축의 기록이 보임.

그러다가,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인 17세기 후기에 와서야 비로소 교서관은 ‘校書館印書體字’ 등을 주조하면서 ‘금속활자 주조’의 기능을 본격적으로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서관인서체자⁶³⁾는 2차례나 주조되어⁶⁴⁾ 여러 관찬 서적 및 특히 文集類의 인쇄에 끊임없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대한제국 시기 學部 木活字와 함께 교과서 인쇄에 사용되는 등, 무려 200년 이상 오랜 기간에 걸쳐 이 활자가 활용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⁶⁵⁾

따라서, 교서관의 기능에 ‘금속활자의 주조’ 기능을 조선 후기의 특징으로 첨가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기타의 임무’와 관련한 기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교서관의 기타의 기능과 관련하여 논급할 수 있는 사항은, ‘도서의 판매 및 각종 시험의 감독’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도서의 판매’ 기능을 논술하면, 조선 초기부터 인출되는 서적은 그 적은 수량 및 그 반사에 있어서도 제한이 따랐기 때문에, 관련 현직의 중요 관료들을 제외한 일반인(儒生 등)들은 인쇄된 서적을 구하기가 몹시 어려웠다. 따라서 일반 儒臣들과 유생들은 교서관 등에서 인출한 서적들을 紙·米·豆 등으로 교환·구입하고자 하였고, 政府 또한 교서관에서 인출한 서적들을 판매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1410년(태종 10년 2월) 鑄字所에서 인출한 서적

63) 교서관인서체자의 개요 등은 기존의 연구(① 천혜봉, 『한국서지학』(서울: 민음사, 2006), 382-386. ② 이재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교서관인서체자의 분류 및 고증,” 『교서관인서체자』(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7), 256-273) 등, 참조 요.

64) 1차: 1684년 무렵. 2차: 1723년 무렵.

65) 종래 위 활자의 금속 재질을 鐵이라 생각하여 명칭도 ‘교서관철활자’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이 활자의 성분을 분석해 본 결과, 구리·주석·납 등으로 조선후기에 주조된 다른 금속활자들과 성분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이재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교서관인서체자의 분류 및 고증,” 272). 특히 교서관인서체자 또한 조선 후기 금속활자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인, 활자 아랫면에 흠(터널형)이 나 있고 활자 측면에 斷層이 형성된 것(김성수, “조선후기의 금속활자 주조방법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39집(2008. 6), 113-138. 參考 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활자 또한 父字(木活字)의 제작 때 목활자의 上部와 下部를 별도로 제작하고 이를 상·하틀의 鑄物沙에서 서로 맞물려 그 母字를 形成하는 과정을 거쳐 활자를 鑄成한 이른바 ‘上下分離形 활자’라 판단된다.

을 판매하도록 처음으로 허가하였고,⁶⁶⁾ 세종 때(1435) 許稠의 啓에서 ‘인쇄된 『集成小學』을 교서관에서 판매하도록’ 진언하자, 세종은 「소학」뿐 아니라 무릇 鑄字所(校書館)에 있는 冊板을 모두 찍어 내어 판매하는 방안을 의논하게 하였고,⁶⁷⁾ 또한 「性理大全」 <四書五經大全> 등도 각 지방의 鄕校나 개인이 구입·소장하고자 할 때 ‘換紙의 교환’ 방법으로 판매·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⁶⁸⁾ 그리하여 世祖 때인 1457년에는 ‘교서관 소장의 판본들은 인쇄하여 판매’⁶⁹⁾하고 있었고, 1470년 成宗 때에도 ‘교서관에서 서책을 염가로 판매하고 있었음’⁷⁰⁾을 보면, 교서관의 서적 판매의 기능에 의하여, 일반 儒生들에게도 서적이 판매·보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국가에서는 교서관의 위와 같은 여러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文臣들을 기용하였으며, 때에 따라 조정에서는 교서관에 이미 기용된 젊은 문신

- 66) 『朝鮮王朝實錄』太宗實錄 19卷, 太宗10年(1410) 2月 7日(甲辰)條. “서적을 인쇄하여 판매하도록 주자소에 명하다(始令鑄字所, 印書籍鬻之).”
- 67) 『朝鮮王朝實錄』世宗實錄 68卷, 世宗17年(1435) 4月 8日(己酉)條. ○己酉/受常參, 視事. 判中樞院事許稠啓曰: ... 又啓曰: “『集成小學』, 切於日用之書, 學者病其難得. 願依惠民局賣藥例, 或紙或米豆, 量給爲本, 令一官一匠掌其事, 印出萬餘本鬻之, 還本於官. 如此則其利無窮, 而於學者有益.” 上曰: “予嘗讀史, 有曰: ‘頒之大矣, 鬻之非矣.’ 然卿言固善, 予將行之.” 卽命都承旨辛引孫曰: “一如稠啓. 非唯『小學』, 凡諸鑄字所在冊板, 並宜印之, 其議以啓.”
- 68) 『朝鮮王朝實錄』世宗實錄 70卷, 世宗17年(1435) 10月 25日(癸亥)條. ○傳旨各道監司: “『性理大全』及四書五經大全, 中朝諸儒承命撰述之書, 採輯先儒諸說而折衷之, 實理學之淵源, 學者當先講究者也. 太宗皇帝賜與以後, 已曾板刊, 置于鑄字所. 向者印頒臣僚, 期於廣布, 但外方各官鄕校與窮村僻巷, 曾無一本之藏, 鄕邑有志之士, 雖欲考閱, 無由得見, 誠爲可慮. 今同封各冊卷數, 曉諭各官, 如有不干民力, 無弊自備, 欲印置于鄕校者, 暨邑人如有能辦自願印之者, 收其紙以送, 則皆許印送. 如或不願, 不必強使爲之, 其自願者, 亦不必一時盡印諸書, 雖一經一書, 隨其所備紙數, 收納上送.”
- 69) 『朝鮮王朝實錄』世祖實錄 9卷, 世祖3年(1457) 9月 18日(己卯)條. ○傳于承政院曰: “予於教育儒生, 委之學官, 無所勸勵, 深以爲嫌. 念諸生書籍難得, 令梁誠之錄藝文館所藏書, 將以刊行.” 都承旨曹錫文曰: “校書館有五經板子, 官爲印賣, 成均館書籍亦多, 教官宜隨諸生所無授之.”
- 70) 『朝鮮王朝實錄』成宗實錄 6卷, 成宗1年(1470) 7月 24日(庚子)條. ‘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祖宗朝에서는 典校署로 하여금 종이를 바꾸어 책을 찍게 하고, 값을 줄여서 和賣하여 中外에 널리 퍼게 하였습니디(韓明澮啓曰: “祖宗朝, 令典校署, 質紙印書, 減價和賣, 廣布中外)”’

들을 기타의 필요한 여러 업무에 다양하게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앙정부에서는 교서관을 비롯한 成均館·承文院·藝文館 등의 문신들을 과거시험(校書館試·漢城試 등) 응시자의 성명기록 및 入門 때 監導官에 투입하기도 하였다.⁷¹⁾ 그리고 三館⁷²⁾의 權知⁷³⁾들을 教授나 訓導官으로 임명하여 교육을 勸勵하는 경우도 있으며,⁷⁴⁾ 그밖에 유생을 糾察하는 임무도 수행하고 있었다.⁷⁵⁾ 교서관원의 이러한 임무들을 묶어 교서관의 기타 기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⁷⁶⁾

4. 교서관의 업무활동

앞의 장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교서관의 여러 기능 중에서 무엇보다 그 핵심기능은 ‘국가 主導의 官撰書에 대한 印出의 기능’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조선의 국가체제를 완비시켰던 成宗 당시(1481: 성종 12)에, 임금이 도승지에게 “[四]館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典校署(교서관)에서는 서적을 印出하는 일을 관장합니다.”⁷⁷⁾라고 단 한 마디로 대답한 것에서도 교서관의 핵심기능

71)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103卷, 世宗26年 2月 甲申條.
 72) 弘文館·藝文館·校書館.
 73) 고려·조선 시대에 어떤 벼슬의 후보자나 試補임을 이르던 말. 문과에 급제하더라도 곧 정식 벼슬을 주지 않고 ‘分館’이라 하여 成均·校書·承文의 三館으로 나누어 실무를 익히게 하였다.
 74)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27卷, 世宗7年 2月 甲寅條.
 75) 『朝鮮王朝實錄』 成宗實錄 11卷, 成宗2年 8月 己未條.
 76) 한동명, “한국 중세인쇄문화의 제도사적 연구,” 184-185. 參考.
 77) 『朝鮮王朝實錄』 成宗實錄 133卷, 成宗12年(1481) 9月 24日(乙未)條. 禮曹判書 이과 등이 와서 아뢰기를, “四館에 11명이 결원[缺職]되었으므로, 일이 많이 중지되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館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였는데, 도승지 김승경이 아뢰기를, “성균관에서는 四學에 나누어 근무하며 생도를 가르치고, 승문원에서는 事大文書와 왜의 서계 등의 일을 관장하며, 典校署에서는 서적을 印出하는 일을 관장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장차 취사하겠다.” 하였다.(禮曹判書李坡等來啓曰: “四館十一員缺職, 事多廢.” 傳曰: “其議領敦寧以上.” 鄭昌孫 尹士昕 洪應, 李克培議: “別設科擧, 乃得充差. 然無甚廢事, 至不得已後, 更議何如?” 傳曰: “館科所爲何事歟?” 都承旨金升卿啓曰: “成均館, 則分仕四學教誨, 承文院, 則掌事大文書及倭書契等事, 典校署, 則掌印書籍.” 傳曰: “予

즉, 그 주요 업무활동은 바로 ‘官撰書籍의 인출업무’ 임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왕조 淸時代에 걸쳐 인쇄·출판된 모든 관찬서적은 교서관의 인쇄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모두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비록 鑄字所·刊經都監·訓練都監·內醫院·觀象監·實錄廳·사역원 등에서 주조된 활자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모든 금속활자와 木板들이 공식적으로 하나같이 모두 교서관의 관리 하에 있었다. 또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종 때의 교서관 雜職의 업무분과와 소요인원 및 人力들이 成宗代에 계승되고, 이것이 경국대전에서 제도화됨으로써, 모든 관찬서적의 인출에는 그 어떤 예외도 없이 교서관에 소속된 인쇄·출판(제본 등 포함) 전문 匠人들에 의하여 직접 인출 또는 과견되는 것이 常例 즉, 일반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⁷⁸⁾

위와 같은 교서관의 인쇄활동은 임진왜란이 발발(1592)하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 이후 仁祖代 末까지 50여년의 기간 동안에는 두·세 차례 이상의 대규모 전쟁과 또한 戰後 사회질서 및 民生의 회복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공식적인 관찬서적의 인출 등의 문화적 측면의 양상은 기대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경제가 피폐하였다. 따라서 교서관의 인쇄활동은 물론 국가경영 자체가 마비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교서관은 비록 이 시기에 관찬서의 인쇄활동은 중단되었으나, 17세기 중기부터 실록의 인출에는 그 지원에 全力을 기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宣祖修正實錄」이 인출될 당시(1657.3.21)에 교서관의 활자 전부를 보내주었다. 뿐만 아니라 활자를 분류하기 위한 수장제원 5-6명을 실록청에 지원하였으며, 仁祖實錄」을 인출할 당시(1652.2.20)에도 교서관의 활자 모두를 실록청으로 보내어 실록의 인출을 지원하였고, 또한 「孝宗實錄」의 인출 당시(1650.7.4)에도 그 인출

將取士.”).

78) 연구의 기획 당시에는 교서관의 인쇄활동에서 ‘印出’과 ‘校勘’ 등으로 구분하여 논술하고, 또한 인출 부문에서는 ‘목판’이나 ‘활자’ 등 관종별로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하였으나, 본 연구의 원고 분량의 제한 및 조선의 淸時代에 걸친 관찬서에 대한 인쇄활동에 관한 상황은 제목을 달리하는 별도의 연구에서도 대형 과제에 속할 만큼 대규모이기 때문에,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 본 연구에서는 부득불 그 일반적인 상황만을 고찰한 한계가 있음을 여기에 밝힘.

에 필요한 均字板·銅印札·均字刀·刻刀 등과 도서관 소장 금속활자들을 실록청에 전부 보내어 실록의 인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사례 등에서,⁷⁹⁾ 도서관은 대표적인 國家印出 사업 중의 하나였던 실록의 편찬·발간에도 금속활자와 專門匠人 및 印出材料까지 그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임진왜란이 끝난 뒤인 중선 중기 이후, 도서관이 국가의 인쇄기능을 다시 회복한 것은 仁祖(1623-1649) 말기인 1648년에 훈련도감의 匠人들을 흡수한 시기 이후인 17세기 후기로 볼 수 있다.⁸⁰⁾ 즉, 四鑄甲寅字인 戊申字의 주조는 도서관의 인쇄활동 再開에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된다. 무신자는, 金佐明⁸¹⁾이 1668년(현종 9)에 戶曹와 兵曹의 물자와 인력을 활용하여 守禦廳에서 주조한 大字 66,100여 자와 小字 46,600여 자를 주성한 것으로, 이 활자는 1672년에 도서관으로 옮겨졌다.⁸²⁾ 그리하여 무신자에 의한 도서관의 인쇄활동 再開는 임진왜란 이전 관찬서적 인출의 기능을 부활시켰고, 연이어 도서관에서 직접 동활자로 주조된 校書館印書體字⁸³⁾(1684, 1723: 2차 주조)를 비롯한 壬辰字(1772: 五鑄甲寅

79) 배현숙, “出版機關으로서의 實錄廳에 관한 研究 I,” 『조선시대 인쇄출판 기관의 변천과 발달』 <2008 청주직지축제 기념 조선왕실 주조 금속활자 복원사업 관련 학술회의>(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8.9.4-5), 237-239, 251. 참고.

80) 천혜봉, 『韓國典籍印刷史』(서울: 범우사, 1990), 205. 이 당시 훈련도감이 자금자족의 한 방안으로 목활자를 만들어 인쇄·보급하여 도서관이 기능을 대신 수행하였다. 도서관이 그 인쇄기능을 회복한 것은 1648(仁祖 26) 8월 李時昉에게 頒賜한 『纂圖互註周禮』(천혜봉, 『韓國典籍印刷史』, 301쪽의 圖版. 參照)의 跋文에 의해 그 사실이 입증된다.

81) 현종 때 호조판서·병조판서·守禦使를 겸직한 바 있음.

82) ① 『朝鮮王朝實錄』 顯宗改修實錄 19卷, 顯宗9年(1668) 8月 5日(辛未)條. ‘당초에 도서관의 鑄字가 임진년 난리에 산실된 뒤 다시 주조하지 못해 木活字로만 책을 인쇄하여 글자 모양이 정미롭지 못했었다. 이때에 이르러 전 호조판서 김좌명이 비로소 銅鐵로 글자를 주조하고 이때부터公私의 서적이 비로소 精美롭게 되었다.’

② 『朝鮮王朝實錄』 顯宗改修實錄 26卷, 顯宗13年(1672) 10月 4日(乙巳)條. ‘수어청이 구리[銅]로 대자(大字) 6만6천1백여 자, 소자(小字) 4만6천6백여 자를 주조하였다고 입계하여, 校局(校書館)에 이송하였다. 前 수어사 金佐明 때에 주조한 글자이다(守禦廳以銅鑄大字六萬六千一百餘字、小字四萬六千六百餘字入啓, 移送校局, 前守禦使金佐明時所鑄字也).’

③ 천혜봉, 『韓國典籍印刷史』, 248. 參考.

83) 이 활자는 종래 鐵活字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이 활자의 성분분석 결과 조선후기의 일반적인 銅活字임이 규명되었다(이재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서관인서체자의 분류 및 고

字)·丁酉字(1777: 六鑄甲寅字) 등에 의한 교서관의 인쇄활동은 조선말기(대한 제국)까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조선시대 淸時代에 걸쳐 교서관 인쇄활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으로 종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중앙의 교서관에서 국가의 史書·典章 및 王室과 관련한 중요한 官撰書들은 반드시 王命에 의하여 처음에 활자로 인쇄하였다가,⁸⁴⁾ 그 후에 다시 板刻하거나,⁸⁵⁾ 그 印本을 地方監營에 보내어 刻板케 하였다'⁸⁶⁾ 87)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들 인쇄활동을 감독하고 총괄하여 主管하는 부서가 바로 교서관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로, 대량의 인쇄가 필요한 서적, 즉 모든 유학자들에게 필요한 유학서적 및 '농업 관련 서적'⁸⁸⁾ 등과 같이 국가경제의 부흥을 위해 대규모로 널리 배포(廣布)할 필요가 있는 서적들은 아예 처음부터 木版本으로 대량으로 인쇄하도록 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⁸⁹⁾ 심지어 『세종실록』 1435년 4월 8일의 기록에

증," 272).

- 84) 세종 시대의 주자본은 일반적으로 50여 부를 인쇄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1429년(세종 11) 3월 22일(戊辰)條의 경우, 「孝經」과 「小學」을 주자소로 하여금 250秩을 인쇄하여 반포하라'는 기록도 보인다.
- 85) 심지어는 刻板의 底本을 만들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먼저 활자판을 만들기도 한 예도 있다. 특히 『國朝寶鑑』이나 『御製教書』들의 官本에서 볼 수 있으며, 打算을 도외시하여 가면서 서적의 印刷美에 유의해 온 당시 인쇄술의 고상한 풍취의 일면을 볼 수 있다.
- 86)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서울: 탐구당, 1974), 204-205.
- 87) 『農事直說』과 같은 서적은 [농업의 진흥의 식량의 증산을 위하여 대량으로] 普及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몇 벌의 鑄字本을 중앙에서 만들고, 이 주자본을 각 지방에 보내어 이를 각각 판각하여 목판본으로 널리 인쇄하도록 하고 있다(한동명, "조선 중세인쇄문화의 제도사적 연구," 153).
- 88) 아래 脚註 ②의 註文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農書'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書名은 확인할 수 없다.
- 89) ①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51卷, 世宗13年 2月 28日(癸亥)條. "「左傳」, 學者所當觀覽. 用鑄字印之, 則未能廣布, 宜令刊板, 使之廣行."
 ②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40卷, 世宗10年(1428) 閏4月 13日(甲午)條. 경상도 감사에게 <農書> 1천 부를 인쇄하여 올리라고 진지하다(傳旨慶尙道監司: 咸吉、平安兩道地品好, 而無知之民, 泥於舊習, 農事齟齬, 未盡地力. 欲採可行良法, 使其傳習, 道內耕種耘穫之法、五穀土性所宜及雜穀交種之方, 訪之老農, 撮要成書以進. 且<農書>一千部, 以國

서는, 「集成小學」은 日用에 艱요하면서도 구하기 어려운 책이라(교서관에) 紙·豆·米를 주어 贖錢으로 삼게 하고, 인쇄하는 담당자를 두어 10,000부를 인쇄하여 판매하는 방안도 進言하고 있는 실정이다.⁹⁰⁾ 따라서 조선시대 교서관의 인쇄·출판에서는, 금속활자의 鑄造와 인출 못지않게, 대량의 목판인쇄 활동 또한 매우 활발하였던 특징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셋째로, 조선시대에는 그 초기(1392-1493)·중기(1516-1723)·후기(1749-1883)⁹¹⁾를 막론하고 금속활자의 주조활동은 조선조 전시대에 걸쳐 균등하고 꾸준하게 지속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즉, 조선 초기에는 14종의 활자가 주조되었고,⁹²⁾ 중기에는 17종의 활자가 주조되었으며,⁹³⁾ 그 후기에는 16종의 활자가 주조됨⁹⁴⁾으로써, 조선시대에서는 총 47여 종의 활자가 개발·주조되었기 때문에 ‘조

庫米豆, 換紙印進.”)

90) 『朝鮮王朝實錄』世宗實錄 68卷, 世宗17年(1435) 4月 8日(己酉)條. 又啓曰: “『集成小學』, 切於日用之書, 學者病其難得. 願依惠民局賣藥例, 或紙或米豆, 量給爲本, 令一官一匠掌其事, 印出萬餘本鬻之, 還本於官. 如此則其利無窮, 而於學者有益.” 上曰: “予嘗讀史, 有曰: ‘頒之大矣, 鬻之非矣.’ 然卿言固善, 予將行之.” 卽命都承旨辛引孫曰: “一如桐啓. 非唯『小學』, 凡諸鑄字所在冊板, 並宜印之, 其議以啓.”

위 ‘10,000부를 인쇄하여 판매하자’는 진언에 대한 그 실행여부 및 결과에 관한 기록은 현재 찾아볼 수 없는 듯하다. 그렇지만 위와 같이, 국가적인 규모에서 대량으로 요구되는 책에 대한 목판인쇄는 매우 활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해졌다고 할 것이다.

91) 시대구분의 근거는, ① 그 초기는 개국(1392)부터 국가의 기반이 완비된 성종시대 계축자(1493)의 주조까지의 100년간의 주조활동 시기, ② 그 중기는 인진왜란을 전후한 각각의 약 100년간 즉 병자자(1516)부터 후기교서관인서체자(1723)까지의 약 200년간의 주조활동 시기, ③ 그 후기는 조선의 문화부흥기인 영조시대의 율곡전서자(1749)부터 조선말기 신연활자(1883)의 약 130년간의 주조시기까지를, 각각 그 시대구분의 경계로 삼았음.

92) ① 계미자(1403: 태종 3), ② 경자자(1420: 세종 2), ③ 갑인자(1434: 세종 16), ④ 월인석보한글자(1447: 세종 29), ⑤ 병진자(1436: 세종 18), ⑥ 무오자(1438: 세종 20), ⑦ 경오자(1450: 문종 즉위년), ⑧-⑨ 을해자(1455: 세조 1) 및 을해자병용한글자(1461: 세조 7), ⑩ 정축자(1457: 세조 3), ⑪ 무인자(1458: 세조 4), ⑫ 을유자(1465: 세조 11), ⑬ 갑진자(1484: 성종 15), ⑭ 계축자(1493: 성종 24).

93) ① 병자자(1516: 중종 11), ② 인력자(16세기), ③ 경진자(1580), ④ 을해자체 경서자(1587경: 선조 20경), ⑤ 무오자(1618: 광해 10), ⑥-⑦ 무신자 및 무신자병용한글자(1668: 현종 9), ⑧ 병진왜인자(1676: 숙종 3), ⑨ 낙동계자(1673경: 현종 14), ⑩ 현종실록자(1677: 숙종 3), ⑪ 초주한구자(1677경: 숙종 초기), ⑫ 전기 교서관인서체자(1684 이진: 숙종 초기), ⑬-⑭ 원종자 및 원종한글자(1693: 숙종 19), ⑮ 숙종자(1693: 숙종 19), ⑯-⑰ 후기 교서관인서체자 및 병용한글자(1723 이진: 경종 초기).

선은 인쇄의 나라'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바로 이러한 거의 모든 금속활자들이 교서관의 인쇄 및 출판 활동에 동원된 특징을 들 수 있다.⁹⁵⁾ 다시 말하여, 조선시대 중기의 두 차례 전쟁(임진왜란: 1592, 병자: 1636)의 그 사이에도 금속활자가 주조되었고,⁹⁶⁾ 교서관의 인쇄·출판 활동 또한 전시대에 걸쳐 지속적으로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교서관의 인쇄활동에 있어서는, '誤字와 脫字가 없이 본문을 깨끗이 찍어 내기 위하여 매 판마다 그 校勘이 철저하였으며, 監印官은 校書館員으로 하여금 맡아보게 하였고, 특히 그 교감과 인쇄의 소임이 아주 엄격하게 이루어졌으며, 관판본에 따라서는 監校와 監印의 관등성명을 권말에 표시하기도 하였다'⁹⁷⁾는 사실 등에서, '조선시대 교서관의 인쇄활동에 입각한 인쇄본은 철두철미하게 정교(精巧)하였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⁹⁸⁾⁹⁹⁾ 조선 초기부터 관례화된 이와 같은 특징은 조선 후기인 正祖 때까지 계승되어, 교서관이 奎章閣의 外閣으로 편입되어서도, '교서관(외각)의 제조·부제조·교리의 직임은 內閣(규장각)의 제학·직제학·직각에게 각각 겸임시켜 監校과 監印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¹⁰⁰⁾하였던

94) ① 율곡전서자(1749: 영조 25), ②-③ 임진자 및 병용한글자(1772: 영조 48), ④-⑤ 정유자 및 병용한글자(1777: 정조 1), ⑥ 재주한구자(1782: 정조 6), ⑦-⑧ 초주 정리자 및 병용한글자(1795: 정조 19), ⑨ 정리자체철활자(1800 이전), ⑩-⑪ 전사자 및 병용한글자(1816: 순조 16), ⑫ 필서체철활자(1800년 초기), ⑬-⑭ 재주 정리자 및 병용한글자(1858: 철종 9), ⑮ 삼주한글자(1858: 철종 9), ⑯ 신연활자(1883경: 고종 20년경).

95) 천혜봉, 『한국금속활자본』(서울: 범우사, 1993), 177-180.

96) 심지어 인진왜란(1592)과 병자호란(1636)의 그 사이의 기간에도 삼주갑인자인 무오자(1618)가 주조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는바, 조선시대 금속활자의 주조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정열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가늠하여 볼 수 있다.

97) 천혜봉, 『한국 서지학』(서울: 민음사, 2006), 38. 參考.

98) 監校과 監印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아서, 항상 함께 한 특징 또한 지니고 있다. 예컨대, 교감에서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는 監校官이며, 오래 학식이 깊은 文臣이 임명되었다. 그 예로써 1448년(세종 30)에 「고려사」를 주자소에 보내어 이를 찍게 할 때, 그 감교를 梁誠之가 맡았는데, 양성지는 세조시대인 1461년(世祖 7年 7月 18日(丙辰))에는 교서관의 최고책임자인 提調를 겸임하게 된다.

99) 中宗 때, 「大典後續錄」에서는, 오자와 탈자가 없는 철저한 인쇄·출판을 위하여, 監校官·監印官·唱準·守藏·均字匠·印出匠에 대한 罰則條項까지 마련되기도 하였다.

100) 천혜봉, 『한국 서지학』, 38.

사실에서도 이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이상의 본론에서 논술한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는 그 초기부터 ‘서책을 국가의 귀중한 보배(重寶)’로 규정하는 송문주의 정책을 펼친 가운데, 교서관은 바로 이러한 국가의 서책인 官撰書의 인쇄와 출판을 담당하였던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서관은 조선시대 국가 중앙인쇄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직·기능·업무활동을 수행하였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제2장에서는 교서관의 조직과 그 변천 상황을 考究하여 보았다. 그 결과,

조선초 교서관(교서관)은 그 초기에 15명의 文臣이 근무하는 ‘正三品の 衙門(기관)’으로 출범하였다가, 1401년(태종 1)에는 書籍院을 병합하면서 ‘교서관’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 조직 또한 강화되었다. 특히 교서관에서는, 太宗 때부터 서책에 관한 실제의 인쇄 업무를 담당하는 雜職이 확보되어, 서책 印出의 공정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system)를 構築하게 되었다. 그 후, 세조 때(1460)에 주자소가 혁파되면서 교서관에 합속되었고, 1461년에는 ‘二品官의 衙門(기관)’으로 그 면모가 一新되었다. 그런데 1466년(세조 12)에 교서관은 ‘典校署’로 그 명칭이 변경되면서 ‘五品の 衙門(기관)’으로 강등되었다가, 1471년(成宗 2)에 간경도감이 혁파되고 동시에 교서관에 合屬되었으나, 교서관 조직의 승격은 없었다. 그러다가 成宗 때(1484)에 ‘전교서’는 ‘교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동시에 ‘三品の 아문’으로 그 관제가 승격되었다. 이로써 교서관의 조직체계는 1485년에 經國大典 이 최종 반포와 더불어 ‘三品の 官衙’로 제도화되었다. 1777년에 정조의 강력한 문화정책 및 개혁정치의 큰 틀을 마련할 때 교서관은 奎章閣의 外閣으로 편입되었으나, 그 기능은 조선 말기까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제3장에서는 교서관의 기능을 고찰하여 보았다. 그 결과,

교서관의 기능은 국가적인 규모와 측면에서 ① 書籍의 印出 및 頒賜, ② 木

板·藏書(文籍·圖書)·鑄字의 관리, ③ 印篆·香祝의 管掌, ④ 金屬活字의 鑄造, ⑤ 기타의 임무' 등으로 크게 5大 구분하여 그 기능을 분류할 수 있었다. 이 중, 특히 '교서관의 인출 기능'은 지방에서 관각한 관목 및 교서관 소장의 목판·금속활자에 의하여, 교서관에서 서적을 인출·보급하는 업무가 그 핵심 기능이었음을 주목·파악하였다. 특히 본 장에서는, 조선 후기 교서관에서의 '校書館印書體字'의 주조를 주목하여, 교서관 기존의 기능에 '금속활자의 주조 기능'도 추가로 포함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셋째, 제4장에서는 교서관의 업무활동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서관은 서적의 인출업무가 그 핵심 기능이었기 때문에 조선왕조 300년에 걸쳐 인쇄·출판된 모든 官撰書籍은 교서관의 인쇄활동과 직·간접적으로 모두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는 비록 鑄字所 등 임시기관들에서 주조된 활자라 하더라도, 모든 활자와 木板들이 교서관의 관리 하에 있었고, 교서관의 조직에서 인쇄·출판의 실제 업무와 관련한 雜職이 成宗代 경국대전에서 제도화됨으로써, 모든 관찬서적은 교서관에 소속된 監校官·監印官 등의 전문관료 및 인쇄·출판의 전문 匠人들에 의하여 인출되는 것이 常例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조선시대는 '서책을 국가의 귀중한 보배(重寶)'로 看做하는 승문주의 정책을 펼쳤으며, 이에 입각하여 교서관은 관찬서적의 인쇄와 출판에 관한 기능 등을 담당하였던 정규적인 국가 중앙인쇄기관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吏典, 校書館條. 禮典 用印條. 吏典 雜職 校書館條. 吏典 雜職. 校書館 사등시(司騰寺) 造紙所條. 吏典 京官職 校書館條. 工典 京工匠 校書館條.

「大典後續錄」.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 京都下 校書館條.

「英宗大王實錄廳儀軌」.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增補文獻備考」卷220, 職官考7. 校書館條.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탐구당, 1974.

김성수. “조선후기의 금속활자 구조방법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39집 (2008. 6), 113-138.

김성수 · 이승철. “校書館의 機能과 組織 및 印刷活動.” 『조선시대 인쇄출판 기관의 변천과 발달』. <2008 청주직지축제 기념 조선왕실 주조 금속활자 복원사업 관련 학술회의>.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8. 141-161.

남권희. “조선시대 금속활자 구조와 조판에 관한 연구.” 『갑인자와 한글활자』.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7. 15-186.

배현숙. “出版機關으로서의 實錄廳에 관한 研究 I.” 조선시대 인쇄출판 기관의 변천과 발달 . <2008 청주직지축제 기념 조선왕실 주조 금속활자 복원사업 관련 학술회의>.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2008.9.4-5). 225-252.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東國輿地備考. 서울: 協進文化社, 1956.

이재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교서관인서체자의 분류 및 고증.” 『교서관인서체자』.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7. 256-273.

천혜봉. 고인쇄 . 서울: 대원사, 1989.

천혜봉. 韓國典籍印刷史 . 서울: 범우사, 1990.

천혜봉. 한국금속활자본 . 서울: 범우사, 1993.

천혜봉. 한국서지학 . 서울: 민음사, 2006.

韓東明. “韓國 中世文化的 制度史的 研究.”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6. 8.

玄英娥. “校書館에 對하여.” 『도서관학보』 창간호(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1972. 8), 104-114.